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센터의 직무에 반영하고,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에 맞추어 일부 정비함 (제2조)

나. 센터의 조직으로 ‘창의융합교육실’과 ‘산학협력실’을 추가하고 각 실의 업무 분장 사항을 반영함 (제4조)

다. 공학교육인증 대상 전공을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으로 명시함 (제6조)

라. 센터 내 소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제7조제6항)

마. 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함 (제11조)

2. 개정 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환경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공과대학의 교육방법”을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교육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수행 및 확산

제4호제1항 중 “연구기획부”를 “창의융합교육연구실, 산학협력실, 연구기획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창의융합교육연구실은 선진 공학교육과 연구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③산학협력실은 산학연계와 협력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제6조 본문 전단 중 “각 전공별”을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으로 하고, 후단 중 “공과대학”을 “건축도시시스템공학”으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중 “재무처 회계과”를 “총무처 회계팀”으로 한다.

부칙(2023. 5.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제2조(직무)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교육환경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공과대학의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조(직무)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반영
1. 공학교육 관련 학술 연구	1. ……	
2. 공학교육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	2. ……	
3. 공학교육의 시스템 개발	3. ……	
4. 공학교육방법 개발	4. ……	
5.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 준비	<삭제>	*사업 준비에 관한 내용 삭제
6.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	6. ……	
<신설>	7.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수행 및 확산	*신설 사업 반영
7.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8. ……	*호번호 변경
제4조(조직) ①공학교육혁신센터에 연구기획부, 교육운영부, 행정실을 둔다.	제4조(조직) ①……창의융합교육연구실, 산학협력실, 연구기획부……	*창의융합교육연구실 산학협력실 추가
<신설>	②창의융합교육연구실은 선진 공학교육과 연구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각 실의 업무 분장 사항 반영
<신설>	③산학협력실은 산학연계와 협력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②연구기획부는 공학교육인증 교육에 관한 기획과 프로그램 업무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항번호 변경
③교육운영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사업을 준비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임무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항번호 변경
④행정실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공과대학 행정실과 통합 운영한다.	⑥……	*항번호 변경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제6조(프로그램디렉터) 공과대학 각 전공별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기획,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프로그램디렉터를 두며, 프로그램디렉터는 공과대학 전공주임교수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프로그램디렉터)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도시시스템공학……	*공학교육 인증 대상 전공명 명시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⑤ (생략)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제11조(현금 출납)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11조(현금 출납) ……총무처 회계팀……	*부서명 현행 반영
	부칙(2023. 5.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